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고시) 개정안내

**고 시 : 2011-272호**

**공포일자 : 2011. 12. 26**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협회(www.keea.or.kr)**

## 개정배경

감사원 결과통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완화,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 자체설계·감리비 산정기준 마련(안 제31조제2항)

- ◎ 동 요령에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체설계·감리비에 대한 대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감사원 결과통보에 따라 자체설계·감리비의 산정기준을 마련
  - \* 자체감리비 :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 자체설계비 : 실시설계를 제외한 기본설계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

### ■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신고서류 개선(안 제47조)

- ◎ 현재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자격·경력인정을 위해서는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절차가 복잡
- ◎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추가로 인정하여 외국인 기술자의 편의 도모

### ■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 확대(안 제63조)

- ◎ 설계·감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인 서울보증보험(주)이 발행하는 자본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 그 밖의 개정사항

- ◎ 감리원 교체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활용을 도모(안 제25조제5항)
-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용역대가 산정 요율을 완화(안 별표 1 비고 제2호)
- ◎ 경력신고자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경력보증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별지서식)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알림마당 → “입법 및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안내

대통령령 : 제23458호

공포일자 : 2011. 12. 30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팀(02-2110-5442)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http://www.mke.go.kr)), 협회([www.keea.or.kr](http://www.keea.or.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하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 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http://www.keea.or.kr)) 알림마당 → “입법 및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안내

대통령령 : 제23367호

공포일자 : 2011. 12. 13

담당부서 : 소방장비과(02-2100-5383)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http://www.nema.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036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 방식을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의 감액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지식경제부) 사례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신고 및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신고 기한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및 공사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은 15일 이내에,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15일 이내, 30일 이내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15이내, 30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한다면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이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에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하의 질의에 따른 ○○일 이내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며,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참고>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인터넷 민원질의 2010. 3. 15)

2. 저는 태양광발전소를 12월에 완공하고 현재 가동 중입니다. 한전에서 요구한 인입비용, 즉 태양광 발전소와 한전전력에 연결하는 공사를 한전에서 시행하였습니다.

• 문제는 초기에 공사비에 도급비, 재료비, 노임등만 있었는데, 3월 정산에는 초기에 없던 항목인 감리비, 폐기물처리비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수백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합니다.

1. 지식경제부에서 인입공사에 따른 지침이나 법령이 개정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의 안전을 위해 별도로 감리를 추가로 받거나, 공사에서 나온 쓰레기를 산업폐기물로 지정 했는지 등입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하고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받은 사람에게 자체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의 감리대가는 발주자·감리업자 간의 대가 산출기준을 정한 것이며, 이 법에서 공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체감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소속 직원의 활용과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으므로 자체감리비를 원인유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3. 15)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1에 의한 설계감리  
요율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감리만을 발주할 경우  
별표 1의 설계감리요율을 따라야 하는지?

• 아니면 기본설계에 대한 감리요율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0조에서 설계감리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검토·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에서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설계감리 또는  
실시설계감리대가를 각각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그러나, 건설분야의 설계감리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09-  
711호) 요율(별표 1)을 참고할 때 각 공사비 대비 기본설계감리  
요율과 실시설계감리요율을 합산할 경우 전기설계감리요율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 기본설계감리요율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설계감리요율의 50% 정도(건설은 약 49.2%)를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4. 8)

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0호 전력시설물 공사감  
리업무 수행지침 제5조(감리원의근무수칙) 비상주  
감리원 관련입니다.

• 6호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여기서  
분기 또는 월별 에서 또는의 의미는 무엇인지?  
잘못된 계산식개인으로 해석할 때 현장 기술지도  
를 분기에 한번 가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지경부고시 제2009-  
160호) 제5조제5항제6호에서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의  
의미는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의 특성·환경 등에 따라 현장  
기술지도를 분기마다 하거나 월별로 하거나 선택하여 정기적  
으로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4. 13)